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9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2
2. 이용자 정보의 제공 관련 청구 대상 확대 (안 제44조의6제1항 신설) ...	8
※ 참고자료	1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토의견	11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검토의견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1. 7.

다.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 업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¹⁾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국내대리인 제도’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로서 이용자수 ·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관

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임.

○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에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되어, 현재는 자료제출 의무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남아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²⁾,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 및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에,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시켜 이용자의 소송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돕는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EU 디지털 법제 또한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확대하는 추세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추가하는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정보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외 본사가 보유한 정보를 전달받는 연락 창구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실제로도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 규제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³⁾.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해외 본사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 정보 제공 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접근·전달에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계약상 내지는 법령상 장치를 마련해야함.
- 둘째, 국내대리인의 지위 및 책임, 국내대리인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연구에서 국내대리인의 법적 지위, 의무의 범위, 법적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제도 운영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⁴⁾,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일반정보보호규정) 등에서도 역외 사업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⁵⁾이 계속되고 있음.

3) 윤혜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

4) 윤혜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

5) Ajith Francis, 「Analysis: EU's Recently Adopted E-Evidence Regulation」, Internet & Jurisdiction Policy Network, 2023.6.15

-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책임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⁶⁾, 국내대리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사이의 다자간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역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는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주체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수입을 기피하거나, 국내대리인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용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업무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피해자의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관련 실효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으로,
-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규제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일부 절차를 국내대리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해외사업자의 대표사무소·영업소 기능을 하도

6) ① 국내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 제공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② 이용자 정보의 오제공·과도한 제공 등 위법한 처리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이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사이에서 어떻게 귀속되는지, ③ 국내대리인이 해외 본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국내법 위반이 되는 경우, 누구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것인지

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 FTA에 따른 ‘현지주재 의무 금지원칙’(제12.5조)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한미FTA 제12.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2. 이용자 정보의 제공 관련 청구 대상 확대 (안 제44조의6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제공자’에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국내대리인으로까지 확대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u>제공자</u> 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유통으로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문언만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⁷⁾.
- 따라서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국내대리인’이라는 용어를 법문에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임.
- 다만, 제44조의6제1항은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전제로 하는바, 국내대리인을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이 직접 보유하는 정보에 한정되는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확보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되는지 등 ‘보유’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에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권리침해 피해자가 국내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7)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토의견

□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개정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 수용

- 국내대리인 업무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피해자의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관련 실효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대됨

※ 개정안은 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규제 준수를 위한 일부 절차(정보 제공)를 국내대리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해외사업자의 대표사무소·영업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 FTA에 따른 ‘현지주재 의무 금지원칙’(제12.5조)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한미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 정보의 제공 관련 청구 대상 확대(개정안 제44조의6제1항 개정) : 수용

-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온라인 상의 권리침해 피해자가 국내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입장

- 이용자의 정보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228